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7
----------	------

발의연월일 : 2023. 1. 27.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곽동환 의원, 박주용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4조)

나.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성을 통한”을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은 경역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현행과 같음)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1. ~ 4. (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 ~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